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 10. 18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.10.9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.10.16.
- 다. 상정일자 :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2.10.18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윤 봉 숙 가정복지과장

가. 제안이유

여성가족부가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있어서 지역연대의 중심적 활동이 보호보다는 안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보호를 안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토록 지침을 시달하여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 제명 변경
 -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

→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

2) 본문에서 용어 변경

- “아동·여성보호” → “아동·여성 안전” (안 제1조)
- “아동·여성보호” → “아동·여성 안전” (안 제7조)
- “아동·여성보호” → “아동·여성 안전” (안 제8조제3항)
- “아동·여성 보호” → “아동·여성 안전” (안 제8조제5항)
- “아동·여성보호” → “아동·여성 안전” (안 제9조제2호)
- “아동·여성보호” → “아동·여성 안전” (안 제9호제4호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가 지역사회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「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」 명칭을 「아동·여성안전지역연대」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,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4조에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할 세부사항 신설 및 안 제8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